

●**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-001호**

방송통신위원회는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로 신고된 유통점 대상 사실조사 결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09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행정처분 사전통지(공시송달)

1. 근거법령

-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, 제14조(시정명령), 제22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대상자	주민등록번호	고지 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
문*빈(언*통신)	930928-1*****	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49-1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	4,500,000 이하

3. 게재(게시) 기간 : 공고일부터 15일간

4. 의견제출 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5. 의견제출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(☎ 02-2110-1555/ FAX 02-2110-0143 / E-mail :leebc@korea.kr)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